2026년 휘닉스CC 연단체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휘닉스 컨트리클럽(이하 "당 클럽"이라 한다)과 연단체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품격 있는 연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연단체"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가입을 승인받아 당 클럽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3팀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2. "연단체 회원"이라 함은 연단체에 소속된 개인을 말한다.
3. "대표자"라 함은 연단체를 대표하여 예약, 정산, 공지 등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회장, 총무 등을 말한다.
4. "위약"이라 함은 예약 취소 규정 시간을 경과하여 취소하거나, 예약 당일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No-Show)를 말한다.

제3조 (가입 자격 및 조건)

1.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3팀(1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연단체는 **연간 5회 이상**의 라운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당 클럽은 가입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가입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4조 (예약 절차)

1. 모든 예약 신청 및 변경, 취소는 단체의 **지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예약 신청은 이용 희망 월의 전월 10일까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확정은 전월 20일 전후로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3. 예약 확정은 당 클럽의 코스 사정에 따라 선착순 및 단체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다.

제5조 (요금 및 정산)

1. 골프장 이용 요금(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은 당 클럽이 별도로 정한 연단체 요금 정책에 따른다.
2. 모든 이용 요금은 라운드 당일 현장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 계약에 따라 선.후불 정산이 가능하다.

제6조 (예약 변경 및 취소, 위약 규정)

1. 예약 변경: 팀 수 변경은 예약일 기준 **10일 전 17시까지**, 시간 변경은 타 팀 예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2. 예약 취소:

전체 팀 취소: 예약일 기준 15**일 전 17시까지** 위약 없이 취소 가능하다.

일부 팀 취소: 예약일 기준 10**일 전 17시까지** 위약 없이 취소 가능하다.

3. 위약 처리:

상기 규정 시간을 경과하여 취소하거나 당일 미내장(No-Show) 시, 당 클럽의 위약 규정에 따라 **팀당 그린피 합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위약금은 해당 단체 대표자에게 청구되며, 납부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

연간 3회 이상 위약이 발생한 단체는 차기 연도 연단체 자격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악천후 시 운영)

1. 강설, 폭우, 안개 등 라운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악천후 시, 모든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악천후로 인한 경기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당 **클럽의 공식 발표**에 따른다.
3. 경기 중 악천후로 인해 라운드를 중단할 경우, 이용 요금은 당 클럽의 내규(홀별 정산)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에티켓)

1. 모든 회원은 당 클럽의 이용 약관 및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나친 도박성 내기,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하며, 품위 있는 복장과 경기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3.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티오프 30분 전까지 내장 완료하여야 하며, 경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단체" 담당자는 당 클럽의 이용일 기준 3일전까지 조편성(남/여 구분)을 사전 접수해야 한다.

제9조 (혜택 및 지원)

1. 연단체에는 본 규정 제5조에 따른 특별 요금이 적용된다.
2. 단체 규모 및 활동 실적에 따라 대표자 회원 대우, 리조트 시설 할인 등 별도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클럽은 해당 연단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간 최소 라운드 횟수(5회)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용 요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4. 회원의 비신사적인 행위로 골프클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1조 (규정의 개정 및 효력)

본 규정은 당 클럽의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적용 30일 전까지 단체 대표자에게 공지하며, 공지 후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단체팀은 연단체 운영 규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장 (인 / 서명)

총무 (인 / 서명)